

政治資金에 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 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4. 2. .

제 안 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4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04. 1. 8)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4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1. 13)에서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구성됨.

나. 제244회국회(임시회)폐회중 및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10차 정치자금법소위원회(2004. 1.15~2. 5)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의원발의법률안 등을 종합·심사한 결과 오세훈의원, 박종희의원, 이재오의원, 김효석의원, 황창주의원, 정장선의원의 서면동의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4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4. 2. 9)는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2. 제안이유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예금계좌입금·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 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대통령경선예비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의 경우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시기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총액에서 후원회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사용잔액과 당해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총액을 환수하고, 당내경선 낙선자는 모금액중 미사용 잔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0조의3).

- 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현행의 모금방법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4 제1항·제6조의5등).
-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 마.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산상 계상에 있어 동시지방선거시 유권자 1인당 1,8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그 배분 및 지급은 현행과 같이 의석수 비율 등에 의하되,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 기준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로 하되 복수계좌 개수는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출은 단일계좌로 함(안 제22조의3).

- 아.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비당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하며, 부실·불법감사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24조제8항·제32조제10호).
- 자.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해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에 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 차.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안 제33조의2).
- 카. 현행의 각종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를 맞춤(안 제33조의3).
- 타.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4제2항).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政治資金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支出狀況을 公開함으로써”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회 50만원 미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조제1호중 “地區黨”을 “시·도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政治活動을 위하여 제공되는 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 창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개인·法人”을 “개인”으로, “기타 團體”를 “그 밖의 자”로, “金品이나”를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로 하고, 동조제6호중 “개인·法人 또는 團體가”를 “개인이”로 하며, 동조제8호중 “政黨의 中央黨(政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市·道支部, 地區黨·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立候補登錄을 한 者(이하 “地區黨등”이라 한다)”를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로 한다.

제4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납부일자와 금액,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당비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③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政黨의

中央黨 및 市·道支部, 地區黨 등(이하 “政黨 등”이라 한다)은”을 “후원회지정권자는”으로, “지체없이”를 “14일 이내에”로 하며, 동조 제3항 후단중 “第12條”를 “제12조(기부의 제한)제1항”으로, “第6條 但書”를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 위원회를 포함한다], 정당의 시·도당
2. 국회의원
3.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포예비후보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일이 대통령선거경선포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대통령선거경선포예비후보자로 본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국회의원후보자등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

다]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④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제8조”를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로, “政黨등에”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6조의4제2항 본문”을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政黨등에”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로, “지체없이”를 “3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市·道支部後援會, 地區黨後援會,”를 “시·도당후원회,”로, “地域選舉區”를 “지역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後援人”을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1億2千萬원(法人的 경우 2億5千萬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年間”을 “연간[대통령선거경선폰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中央黨後援會”를 “중앙당후원회 또는 대통령선거경선폰비후보자후원회”로, “1億원(法人的 경우 2億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黨支部後援會”를 “시·도당후원회”로, “1億원(法人的 경우 2億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地區黨등”을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폰비후보자”로, “2千萬원(法人的 경우 5千萬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00萬원이내의”를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초과하여 寄附한”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으로, “초과분”을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당 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평의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평의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②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

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같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포함한다).

제6조의4제1항중 “集會에 의한 募金, 郵便·通信”을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으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발행한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의 방법으로 金品을 모집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및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政黨등에”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로 하고,

동향 후단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광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지역선거구에 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제6조의5의 제목“(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을“(우편·통신에 의한 모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集會 또는 郵便·通信”을“우편·통신”으로,“目的, 集會日時·場所”를“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公報處長官”을“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7의 제목“(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을“(정치자금 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으로 하고, 동조중“定額領收證”을“정치자금영수증”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 기부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및 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8제1항중 “第6條의3第1項 但書”를 “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으로, “임기만료로 인한”을 “임기만료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정치자금영수증) ①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되, 1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품의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익명기부는 제외한다)하되,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은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
- ③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납입하여야 한다.
- ④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양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⑤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5만원·10만원·50만원·100

만원·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 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⑥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 받은 것으로 본다.

⑧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발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중 “政黨등”을 “후원회지정권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政黨등이”를 “후원회지정권자가”로, “때 또는 地區黨後援會가 第5條第1項 但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地區黨의 代表者가 된 경우에는 당해 地區黨의 後援會는 그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併決議(당해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의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合併決議를 말한다)로써 그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로 存續할 수 있다.”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를 “국회의원후보자”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第2項 또는 第3項”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총액에서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 비용 및 사무실임대료, 사무직원 인건비 등 후원회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용잔액”이라 한다)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총액(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고 남

은 잔액을 말한다)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당대표 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사용잔액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접(法人·團體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직접”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年間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으로 한다.”를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로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13조의 제목“(同前)”을“(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17조제2항중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로 인한 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각 選舉마다 800원씩을,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로 인한 同時選舉의 경우에는 각 選舉마다 600원씩”을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한 금액”으로, “추가하여 計上한다.”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6항”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의회의원선거”로, “계상한다.”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전국지역구총수의”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임기만료로 인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

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補助金”을 “제17조(보조금의 계상)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얻은”을 각각 “가진”으로, “議席을 얻지 못하였거나”를 “의석이 없거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그 國會議員總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분의 2 이상을 得票한 政黨”을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얻은”을 “가진”으로,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분의 0.5 이상 得票한 政黨”을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분의 2 이상 得票한 政黨”을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國會議員總選舉에서 得票한 政黨의 得票數比率”을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로 한다.

제19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

항중 “政黨”을 “정당[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와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하 “공직선거후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8조”를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로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100분의 10은 시·도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시·도당을 말한다]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호중 “제18조”를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로, “때에는 허위보고한 금액”을 “경우에는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보조금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을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시·도지부 및 지구당”을 “시·도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政黨”을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 내지 제25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8에서 같다]”으로, “收入”을 “모든 수입”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모든 收入”을 “수입”으로, “姓名·住所”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姓名·住所”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姓名·住所·職業”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姓名·住所·職業 다만,”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다만,”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政黨등”을 “후원회지정권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姓名·住所·職業”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候補者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責任者를 選任하여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 그”를 “국회의원의”로 하며, 동항제2호중 “職業”을 “직업·전화번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

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으로부터 받은 그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일자·금액,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활동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일자·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나.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선거운동비용

라. 의정활동보고 그 밖의 직무활동비용

마. 당비납부 등 정당활동비용

바.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

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 및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와 이 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록 또는 변경신고·등록한 회계책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회계책임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신용카드, 후원회인·대표자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 1인을 둘 수 있다.

④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시에 2 이상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회계책임자 및 회계사무보조자가 될 수 없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신고, 인계·인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직선거후보자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 ①정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의 목적·일시 및 금액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3. 중앙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에 정하는 회계처리절차 준수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④정당의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會計帳簿의 保存)”을“(회계장부 등의 보존)”으로 하고, 동조중“國會議員候補者의 會計責任者는 第22條”를“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4조(당비)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원부 및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로,“領收證을”을“영수증,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 제22조의4(정당의 회계

처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구입(지급)품의서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내지 第4項의 보고”를 “회계보고”로 하여 이를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政黨과 後援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보고하는 때에는 代議機關이나 그 受任機關의 審査·議決을 거쳐야 하며”를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후원회에 한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로, “公認會計士”를 “당해 정당소속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支出”을 “수입·지출”로,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사본”을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및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政黨의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의 會計責任者는 選舉期間중의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1월(정당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2.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수입내역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치자금의 지출금액·내역 및 결산내역

4.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

②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8월 15일까지,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

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기준일과 2월 이내로 서로 겹칠 때에는 제2항의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하되, 제1항제1호의 내역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내역을 당해선거일 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5.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사실대로 감사하였다는 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중 “異議申請”을 “사본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을 “제24조(회계보고)”로,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을 “수입·지출내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2項”을 “제4항”으로, “第24條第3項”을 “제24조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을 “제24조”로,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을 “수입·지출내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 이하(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

한다.

⑦회계보고서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중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
퇴인의 인적사항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기간중 후보자(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

사·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중 “第5條第2項, 第8條·第10條第3項 또는 第22條第3項”을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3항”으로, “第6條第2項 또는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을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으로, “第15條 또는 第18條”를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또는 제18조(보조금의 배분)”으로, “第21條”를 “제21조(보조금의 반환)”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租稅減免規制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法人稅·所得稅”를 “소득세”로,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匿名의 寄附에 대하여는”을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

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罰則)”을“(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주거나 받은 者”를 각각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로,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3年”을 “5年”으로, “3,000萬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年”을 “자는 5年”으로, “500萬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第6條의2第2項·第6項”을 “제6조의2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중 “第12條 또는 第13條”를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로 하고, 동항제6호중 “第14條”를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로, “寄附를”을 “기부를 받거나 이를”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第5條”를 “제5조(후원회)제1항”으로,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者”를 “후원회지정권자”로 한다.

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당비)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

- 이한 금액을 납부·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3.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4.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및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각종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기한까지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영수증원부,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5. 제2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회계장부 등을 인계·인수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

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9.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10. 제24조(회계보고)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감사보고를 한 자
 11.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2.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4항·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정당·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
선거후보자등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
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지출한 자
3. 제2조(기본원칙)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3항,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4항, 제10조의
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
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6.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양벌규정) 정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및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정치
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
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
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를 해태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를 지체한 자
2.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후원회)제2항,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1항 단서·제2항,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항·제3항,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2항·제3항,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제1항,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 및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제5조(후원회)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3.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 후보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된 자
6. 제24조제7항·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국가에 납입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지급될 보조금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

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지급할 기탁금·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의5(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제33조의7(피고인의 출정)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8(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및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각종의무해태죄등)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2. . 법률 제 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당비영수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후원회의 연간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

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 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

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條 (目的) 이 法은 政治資金의 適正한 제공을 保障하고 그 收入과 支出 狀況을 公開함으로써 民主政治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基本原則) ①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을 수 없다.</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政黨”이라 함은 政黨法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登錄된 政黨의 中央黨과 地區黨을 말한다.</p>	<p>제1조 (목적) …………… …………… <u>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u>…………….</p> <p>제2조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00만원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회 50만원 미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p> <p>제3조(정의) …………… …………….</p> <p>1. …………… …………… <u>시 · 도당</u> …….</p>

현 행	개 정 안
<p>2. "政治資金"이라 함은 黨費, 後援金, 寄託金, 補助金, 後援會의 募集金品과 政黨의 黨憲·黨規 등에서 정한 附帶收入 기타 政治活動을 위하여 제공되는 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p>	<p>2.<u>정치활동을</u> 위하여 정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3. "寄附"라 함은 政治活動을 위하여 개인·法人, 後援會 기타 團體가 政治資金을 제공하는 일체의 行爲를 말한다. 金品이나 施設의 無償貸與, 債務의 免除·輕減 기타의 利益을 제공하는 行爲등은 이를 寄附로 본다.</p>	<p>3. <u>개인,</u>.....<u>그 밖의 자</u>... <u>이 경우 제3자가 정치</u> <u>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u> <u>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u> <u>경우와 금품이나</u>.....</p>
<p>4.~5. (생략)</p>	<p>4.~5. (현행과 같음)</p>
<p>6. "寄託金"이라 함은 政治資金을 政黨에 寄附하고자 하는 個人·法人 또는 團體가 이 法の 規定에 의하</p>	<p>6.<u>개인</u>이..... </p>

현 행	개 정 안
<p>여 選舉管理委員會에 寄託한 金錢 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p> <p>7. (생 략)</p> <p>8. “後援會”라 함은 政黨의 中央黨(政 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 舉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 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市·道支部, 地區黨·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立候補登錄을 한 者(이하 “地區黨등”이라 한다)에 대한 政治 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設立·운영 되는 團體로서 管轄選舉管理委員會 에 登錄된 것을 말한다.</p>	<p>.....</p> <p>.....</p> <p>7. (현행과 같음)</p> <p>8.제5조(후원회)제1항 의 規定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p>
<p>第4條(黨費) 政黨은 黨費를 받을 수 있 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당비) ① (현행 본문과 같음)</p> <p>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납부일자와 금액,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당비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 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납 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 발급기한의 다 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p> <p>③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 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第5條(後援會) ①政黨의 中央黨과 市·道支部, 地區黨등은 각각 하나의 後援會를 指定하여 둘 수 있다. 다만,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立候補登錄을 한 者(이하 “國會議員候補者”라 한다)가 後援會를 둔 경우에는 당해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代表者로 있는 地區黨은 後援會를 둘 수 없다.</u></p>	<p><u>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5조(후원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政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政당의 시·도당</u> <u>2. 국회의원</u> <u>3.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포비후보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政당의 당헌·당규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일이 대통령선거경선포비후보자 등록개시일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대통령선거경선포비후보자로 본다]</u> <u>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u>

현행	개정안
<p>②政黨의 中央黨 및 市·道支部, 地區黨등(이하 “政黨등”이라 한다)은 後援會를 指定하거나 이를 撤回한 때에는 <u>지체없이</u> 그 뜻을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p> <p>③누구든지 自由意思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後援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를 할 수 없는 者와 政黨法 第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後援會는 個人·法人 또는 團體로 구성한다.</p> <p>⑤ (생략)</p> <p>第6條(後援會의 機能) ①후원회는 제8조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p>	<p><u>보자등록)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국회의원후보자등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경우는 제외한다.</u></p> <p>5. 政黨의 중앙당[政黨법 제3조(구성)의 規定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 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p> <p>②후원회지정권자는..... <u>14일 이내에</u>.....</p> <p>③..... <u>제12조(기부의 제한)제1항</u>..... <u>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u>.....</p> <p>④후원회는 개인으로.....</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후원회의 기능) ①..... <u>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u>.....</p>

현행	개정안
<p>당해 政黨등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p> <p>②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後援會가 金品을 政黨등에 寄附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內譯을 <u>지체없이</u>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政黨의 <u>市·道支部後援會, 地區黨後援會, 地域選舉區</u>에서 당선된 國會議員 또는 <u>地域選舉區</u>의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管轄地域外에서 會員을 모집하거나 金品募集을 할 수 있으며, <u>地域選舉區</u>에서 당선된 國會議員 또는 <u>地域選舉區</u>의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事務所와 그 連絡所를 서울特別市와 그 <u>地域選舉區</u>에 둘 수 있다.</p> <p>第6條의2(後援人의 寄附限度등) ①後援人이 後援會에 納入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年間 1億2千萬원(法人의 경우 2億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後援人이 하나의 後援會에 年間 납입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u>후원회지정권자에게</u>..... <u>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2항</u>..... </p> <p>②..... <u>후원회지정권자에게</u>..... <u>30일 이내</u>.....</p> <p>③.....<u>시·도당후원회</u>,..... <u>지역구</u>..... <u>지역구</u>..... <u>지역구</u>..... <u>지역구</u>..... <u>지역구</u>..... </p> <p>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u>2천만원</u>.....</p> <p>②.....<u>연간</u> [<u>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국회의</u></p>

현 행	개 정 안
<p>1. 政黨의 中央黨後援會에는 1億원 (法人의 경우 2億원)</p> <p>2. 政黨의 黨支部後援會에는 1億원 (法人의 경우 2億원)</p> <p>3. 地區黨등의 後援會에는 각각 2千萬원(法人의 경우 5千萬원)</p> <p>③後援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第6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寄附하는 때에는 1回 100萬원이내의 金品은 이를 匿名으로 寄附할 수 있다.</p> <p>④後援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限度額을 초과하여 寄附한 경우에는 해당 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그 초과분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p> <p>⑤ (생 략)</p> <p>⑥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한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는 後援人이 第6條의5의 規定에 의한 金品募集을 위한 集會에 참석하여 後援會에 납입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1回 1萬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이상이어</p>	<p><u>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u>.....</p> <p>..</p> <p>1.중앙당후원회 또는 대통령 선거경선평의후보자후원회.....1천만원</p> <p>2. 시·도당후원회.....500만원</p> <p>3. <u>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u>.....500만원</p> <p>③.....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p> <p>④.....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p> <p>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야 한다.</u></p> <p>⑦ (생략)</p> <p><u>第6條의3(後援會의 寄附限度) ②後援會가 年間 徵收 또는 모집하는 政治資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間寄附限度額의 1.5倍(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集會, 郵便·通信 또는 廣告에 의한 募金으로 부득이하게 年間寄附限度額의 1.5倍(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u></p> <p><u>①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당대표 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들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폰예비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

현행	개정안
<p>①中央黨後援會는 年間 200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 市·道支部後援會는 20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 地區黨등의 後援會는 2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을 각각 초과하여 이를 寄附할 수 없으며,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가 解散한 후 새로이 登錄된 後援會에 있어서는 中央黨의 경우 200億원, 市·道支部의 경우 20億원, 地區黨등의 경우 2億원에 서 각각 後援會가 寄附한 금액 또는 價額을 공제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을 초과하여 寄附할 수 없다. 다만,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 第6條의8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後援會는 그 2倍의 금액을 寄附할 수 있다.</p> <p>③後援會가 年間 徵收 또는 모집한 政治資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間 寄附限度額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寄附할 수 있다.</p> <p>④地區黨등의 後援會는 第1項의 規定</p>	<p>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p> <p>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 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p> <p>②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p> <p>③<u>연간기부한도액</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에 불구하고 年間寄附限度額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寄附할 수 있다.</p> <p>〈현행 제6조의3후단〉</p> <p>第6條의4(金品募集方法등) ①後援會는 集會에 의한 募金,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廣告에 의한 募金과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발행한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의 방법으로 金品을 모집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같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포함한다).</p> <p>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①.....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및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職選舉의 選舉期間중에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中央黨後援會, 管轄區域내의 選舉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市·道支部後援會 및 당해 選舉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地區黨後援會(地域選舉區國會議員後援會를 포함한다)와 候補者後援會(地域選舉區에 候補者로 등록한 國會議員의 後援會를 포함한다)가 集會와 廣告에 의한 募金方法으로 각 1회씩 金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과 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④後援會가 金품을 모집한 때에는 金品募集에 직접 소요된 經費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모집한 金품을 政黨등에 寄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등은 後援會預金計座에 寄附金품을 보관할 수 있다.</p>	<p>②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광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 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지역선거구에 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p>③ (현행과 같음)</p> <p>④.....후원회지정권자에게.....<후단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第6條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①後援會의 金品募集을 위한 集會는 동일한 場所에서 하여야 하며 6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公職 選舉의 選舉日전 3月부터 選舉日까지 는 屋外集會를 할 수 없다.</p> <p>②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한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는 第1項의 集會에서 演藝活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祝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의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이 정하는 방법으로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目的, 集會日時·場所, 納入處· 納入方法과 募金を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p> <p>④公職選舉의 選舉運動期間이 아닌 때에는 集會에 의한 募金의 방법으로 바자회·書畫展·출판기념회·음악회 기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방법(이하 "바자회·書畫展등"이라 한다)으로 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한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는 음악회의 방법으로 金品을 모집할 수 없다.</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바자회·書畫展등은 金品을 모집하는 목적을 벗어</p>	<p>제6조의5(우편·통신에 의한 모금)</p> <p><삭 제></p> <p><삭 제></p> <p>③우편·통신.....목적.....</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나 金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바자회·書畫展등에서 後援人이 物品등을 구입한 價額은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年間納入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限度金額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物品등을 購入한 者에 대하여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政治資金領收證用紙 또는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한다.</p> <p>第6條의6 (廣告에 의한 募金) ①金品 募集을 위한 廣告는 定期刊行物の登 録등에 관한法律 第7條의 規定에 의하 여 公報處長官에게 登錄된 定期刊行 物を 이용하여 1회 募金에 4회의 범 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④ (생략)</p> <p>第6條의7 (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 한 募金) 後援會 또는 後援會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는 定額領收證을 寄附 金品과 交換하는 방법으로 募金을 할 수 있다.</p> <p><신설></p>	<p><삭제></p> <p>제6조의6 (광고에 의한 모금) ①.....문화관광부장관..... 1.·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정치자금영수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p>

현행	개정안
<p><신설></p> <p>第6條의8(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의 범위등) ①第6條의3第1項 但書에서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라 함은 大統領選舉(一部再選舉, 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任期滿了로 인한 각종 公職選舉로서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選舉의 選舉日이 속하는 年度를 말한다.</p> <p>②第6條의3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 平年의 年間寄附限度額의 2倍를 寄附할 수 있는 後援會는 다음과 같다.</p> <p>1. 大統領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당해 政黨의 黨憲 등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候補者를 선출한 政黨의 中央黨과 市·道支部 및 地區黨後援會 또는 地域選舉區國會議員後援會</p> <p>2. 國會議員選舉 또는 政黨의 候補推</p>	<p>터 위임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 기부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및 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p> <p>③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 ①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 임기만료에 의한.....</p> <p>②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p> <p>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p> <p>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p>

현행	개정안
<p><u>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위 각 選舉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中央黨後援會, 管轄區域내의 選舉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市·道支部後援會, 당해 選舉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地區黨後援會(地域選舉區國會議員後援會를 포함한다). 다만, 國會議員選舉의 경우 地域選舉區에 候補者로 등록된 政黨에 소속하지 아니한 國會議員 및 全國選舉區比例代表國會議員의 後援會를 포함한다.</u></p> <p>第7條(寄附金등에 대한 領收證과 定額領收證) ①<u>後援會가 會員 또는 會員이 아닌 者로부터 金品을 納入 또는 寄附받은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제작한 政治資金領收證用紙(이하 “領收證用紙”라 한다)를 사용하여 領收證을 교부하여야 하며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 金融機關의 預金計座, 전화자동응답장치(ARS)의 방법으로 募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規格과 양식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u></p> <p><u>②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 國會議員後援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u></p>	<p><u>자를 추천한 政黨의 중앙黨후원회, 政黨의 시·도당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후원회</u></p> <p>3. <u>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政黨의 중앙黨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政黨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政黨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u></p> <p>제7조(정치자금영수증) ①<u>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되, 1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품의 경우라도 만원 단위 이하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u></p>

현 행	개 정 안
<p>定額領收證을 사용하여 後援會會員 또는 會員이 아닌 者로부터 金品을 納入 또는 寄附받을 수 있다.</p>	<p>에 의한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익명기부는 제외한다)하되,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은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p>
<p>③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 國會議員後援會가 定額領收證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定額領收證에 기재할 寄附金の 금액과 발급수량등을 기재한 申請書 및 領收證發行費用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納入하여야 한다.</p>	<p>③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 ...</p>
<p>④定額領收證에는 寄附金の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稅制惠澤이 부여된다는 文言과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申請後援會에 부여한 一連番號를 표시하고 發行人欄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라는 명칭과 그 職印을 날인(또는 印刷)하되, 그 規格과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p>	<p>④정치자금영수증.....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그 밖의.....</p>
<p>⑤定額領收證에 표시하는 금액은 1萬 원·5萬 원·10萬 원·50萬 원·100萬 원의 5種으로 하고 定額領收證의 원부를 제</p>	<p>⑤..... 100만원 · 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p>

현 행	개 정 안
<p>외한 定額領收證의 앞면 또는 뒷면에 金品을 納入·寄附하거나 받은 者의 姓名·주소 기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後援會가 1年間 申請하여 발행하는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總額은 그 後援會의 年間寄附限度額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後援會는 年間寄附限度額의 범위안에서 定額領收證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p> <p>⑥後援會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발급받은 定額領收證의 12月 31日 현재 매수 등 사용상태를 다음 해 1月 14日까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後援會가 解散한 경우에는 解散한 날부터 14日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定額領收證을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반납하여야 한다.</p> <p>⑦後援會는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 및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과 상이한 금액을 納入 또는 寄附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定額領收證에 대하여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額面金額總額을 納入 또는 寄附받은 것으로 본다.</p> <p>⑧選舉管理委員會와 地區黨後援會 또</p>	<p>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p> <p>.....</p> <p>.....연간(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 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p> <p>..연간모금한도액.....</p> <p>.....연간모금한도액.....</p> <p>.....</p> <p>⑥.....</p> <p>.....정치자금영수증.....</p> <p>.....</p> <p>.....정치자금영수증.....</p> <p>.....</p> <p>⑦.....무정액영수증.....</p> <p>.....</p> <p>.....정치자금영수증.....</p> <p>.....</p> <p>.....</p> <p>⑧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p>

현 행	개 정 안
<p>는 <u>國會議員後援會</u> 기타 <u>定額領收證</u>의 <u>발행·사용등에</u> 관계하는 者는 <u>法律에</u>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後援會에 발급한 <u>定額領收證</u>의 一連番號를 <u>公開</u>하거나 이를 다른 國家機關에 <u>告知</u>하여서는 아니 된다.</p> <p>第8條 (後援會의 登錄申請등) ①後援會의 代表者는 당해 <u>政黨등</u>의 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指定書를 첨부하여 <u>管轄選舉管理委員會</u>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p> <p>②~④ (생 략)</p> <p>第10條 (後援會의 解散등) ①後援會는 당해 <u>政黨등</u>이 解散 기타 사유로 消滅하거나 後援會의 指定을 撤回한 때, <u>定款등에</u>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또는 <u>地區黨後援會가</u> 第5條第1項 但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解散한다. 다만, 後援會를 둔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政黨으로 登錄하거나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候補者가 國會議員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後援會는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存續決議로써 登錄된 中央黨 또는 당선된 國會議員의 後援會로 存續할 수 있으며,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地區黨의 代表者가 된 경우에는 당해 地區黨의 後援會는 그 代議機關</p>	<p><u>정치자금영수증</u> 발행·발급·교부… <u>정치자금영수증</u>..... </p> <p>제8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 ①..... <u>후원회지정권자</u>.....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 (후원회의 해산등) ①..... <u>후원회지정권자가</u>..... <u>때에는</u>..... <u>후원회를</u> 둔 <u>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u> <u>국회의원후보</u> <u>자로</u> 등록된 때에는 그 <u>국회의원예비</u> <u>후보자후원회는</u> <u>국회의원후보자후원</u></p>

현행	개정안
<p>이나 <u>受任機關의 合併決議(당해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の 後援會의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合併決議를 말한다)로써 그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の 後援會로 存續할 수 있다.</u></p> <p>②第1項 但書의 경우에 中央黨後援會의 代表者는 그 存續決議가 있는 날부터 14日이내에, <u>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の 後援會의 代表者는 國會議員任期開始日부터 14日이내에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하며, 그 後援會는 종전의 後援會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u></p> <p>③~④ (생략)</p> <p>第10條의3(後援會가 解散한 경우의 殘餘財産處分등) ①~③ (생략)</p> <p><신설></p>	<p>회로 본다.</p> <p>②.....<u>국회의원후보자</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총액에서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 비용 및 사무실</u></p>

현행	개정안
<p>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로 定한다.</p> <p>第11條 (政治資金의 寄託) ①政黨에 政治資金을 寄附하고자 하는 者는 記名으로 選舉管理委員會에 <u>직접(法人·團體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寄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 4條의 規定에 의하여 黨費를 납부하는 경우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의 後援金과 募集金品을 寄附하는 경우에는 選</p>	<p><u>임대료, 사무직원인건비 등 후원회운영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용잔액”이라 한다)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총액(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사용잔액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u></p> <p>⑤제2항 내지 제4항의.....</p> <p>제11조 (정치자금의 기탁) ①.....<u>직접</u>.....</p>

현 행	개 정 안
<p>學管理委員會에의 寄託을 요하지 아니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1인이 寄託할 수 있는 寄託金은 1回 1萬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이상, 年間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으로 한다.</p> <p>1. 개인의 경우에는 1億원 또는 前年度 所得의 100分の 5중 多額</p> <p>2. 法人 및 團體의 경우에는 5億원 또는 前事業年度末 資本總計(資本金·積立金 기타 剩餘金の 合計額을 말한다)의 100分の 2중 多額</p> <p>③·④ (생략)</p> <p>第12條 (寄附의 制限)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없다.</p> <p>1. 外國人·外國法人 및 外國의 團體, 그러나 大韓民國 國民의 主導下에 있는 外國法人 및 外國團體는 제외한다.</p> <p>2. 國家·公共團體 또는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p> <p>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株式 또는 持分의 過半數를 所有하는 企業體</p>	<p>.....</p> <p>.....</p> <p>②.....</p> <p>.....</p> <p>.....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4. <u>言論機關 및 言論團體</u></p> <p>5. <u>事業 또는 事業場別로 組織된 單位勞動組合</u></p> <p>6. <u>學校法人</u></p> <p>7. <u>宗教團體</u></p> <p>8. <u>3事業年度이상 계속하여 缺損을 내고 그 缺損이 補填되지 아니한 企業體</u></p> <p>②<u>政治資金을 寄附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은 政治資金의 寄附를 위한 別도의 基金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u></p> <p>第13條 (同前)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p> <p>1.~3. (생략)</p> <p>4. <u>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하는 者, 國家나 公共團體로부터 직접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을 받는 企業體, 政府가 支給保證 또는 投資한 企業體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u></p>	<p>②<u>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u></p> <p>제13조 (<u>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u>)</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u></p> <p>.....</p> <p>.....</p> <p>.....</p> <p>.....</p> <p>.....</p> <p>가. <u>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u></p> <p>나.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u></p>

현행	개정안
<p>第17條(補助金の計上) ① (생략)</p> <p>②大統領選舉, 國會議員總選舉 또는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로 인한 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각 選舉마다 800원씩을,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로 인한 同時選舉의 경우에는 각 選舉마다 600원씩을 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하여 計上한다.</p> <p>③ (생략)</p> <p>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정당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p>	<p><u>법인</u></p> <p><u>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u></p> <p><u>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u></p> <p>제17조(보조금의 계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한 금액.....</u></p> <p>.....</p> <p>.....</p> <p>.....</p> <p>.....</p> <p>.....</p> <p>..... <u>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u>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6항.....</u></p> <p>.....</p> <p>..... <u>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의회의원선거..... 계상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임기만료에 의한 <u>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u></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u>임기만료로 인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u></p> <p>第18條(補助金の 配分) ①補助金은支給 당시 國會法 第3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政黨의 所屬議員으로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에 대하여 그 100分の 50을 政黨別로 均등하게 分割하여 配分·支給한다.</p> <p>②補助金 支給 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分·支給 對象이 아닌 政黨으로서 5席이상의 議席을 얻은 政黨에 대하여는 100分の 5씩을, 議席을 얻지 못하였거나 5席미만의 議席을 얻은 政黨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p>	<p>②……………<u>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전국지역구총수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u></p> <p>③……………<u>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u></p> <p>제18조(보조금의 배분) ①제17조(보조금의 계상)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보조금…………….</u></p> <p>②……………<u>가진……………의석이 없거나……………가진…………….</u></p>

현 행	개 정 안
<p>政黨에 대하여는 補助金の 100分の 2 씩을 配分・支給한다.</p> <p>1.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舉에 참여한 政黨의 경우에는 그 國會議 員總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分 의 2이상을 得票한 政黨</p> <p>2.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舉에 참여한 政黨중 第1號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政黨으로서 議席을 얻은 政 黨의 경우에는 최근에 全國적으로 실시된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 分の 0.5이상 得票한 政黨</p> <p>3.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舉에 참여하지 아니한 政黨의 경우에는 최근에 全國적으로 실시된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分の 2이상 得票 한 政黨</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配 分・支給額을 제외한 殘餘分중 100分 의 50은 支給 당시 國會議席을 가진</p>	<p>.....</p> <p>1.....<u>국회의원</u> <u>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u> <u>상인 정당</u></p> <p>2.....<u>가진</u>..<u>후보추천이 허용되</u> <u>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u> <u>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u> <u>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u> <u>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u> <u>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u></p> <p>3.....<u>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u> <u>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u> <u>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u> <u>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u> <u>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u> <u>의 2 이상인 정당</u></p> <p>③.....</p>

현행	개정안
<p>政黨에 그 議席數의 比率에 따라 配分·支給하고, 그 殘餘分은 최근에 실시된 <u>國會議員總選舉에서 得票한 政黨의 得票數比率에 따라 配分·支給한다.</u></p> <p>④~⑥ (생략)</p> <p>第19條(補助金の 用途制限등) ①補助金は 政黨의 運營에 必要되는 經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 이외에는 使用할 수 없다.</p> <p>1.~8. (생략)</p> <p>9. 기타 政黨活動에 必要되는 經費</p> <p>10. (생략)</p> <p>② 제18조의 規定에 依하여 補助金を 支給받은 政黨은 支給받은 第17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補助金 總액의 100分の 20이상을 第1項第5號의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p>	<p>.....</p> <p>.....</p> <p>.....<u>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u>.....</p> <p>.....</p> <p>.....</p> <p>④~⑥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등) ①.....</p> <p>.....</p> <p>.....</p> <p>.....</p> <p>1.~8. (현행과 같음)</p> <p>< 삭제 ></p> <p>10.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00분의 50은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100분의 10은 시·도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시·도당을 말한다]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政黨의 會計責任者는 補助金에 대하여 別途의 計定을 設定하고 다른 政治資金과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p> <p>④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 받은 政黨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助金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제20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p>	<p>③정당[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와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 후보자등(이하 “공직선거후보자등”이라 한다).....</p> <p>④.....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p> <p>제20조(보조금의 감액)</p> <p>1.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p>

현행	개정안
<p>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보고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p>	<p><u>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u> <u>경우에는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u></p>
<p>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p>	<p>2.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p>
<p>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보조금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p>	<p>3.<u>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u></p>
<p>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p>	<p>4..... <u>시·도당</u>..... </p>
<p>第22條(會計帳簿의 備置 및 記載) ① 政黨의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p>	<p>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 내지 제25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8에서 같다]..... ...<u>모든 수입</u>.....</p>

현행	개정안
<p>1. 黨費, 寄附金, 補助金등 모든 收入의 日時·金額·件數 및 黨費納入者의 <u>姓名·住所</u> 기타 明細</p> <p>2. 借入金, 機關紙의 발행 기타 黨憲·黨規등에서 정한 附帶收入의 日時·金額 및 貸與者의 <u>姓名·住所</u> 기타 明細</p> <p>3. 支出의 日時·金額·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u>姓名·住所·職業</u></p> <p>②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p> <p>1. 會員의 後援金·募集金品등 모든 收入의 日時·金額 및 寄附를 한 者의 <u>姓名·住所·職業</u> 다만,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의 경우에는 寄附件別 日時·금액 및 寄附方法</p> <p>2. <u>政黨</u>등에 대한 寄附의 日時·金額</p> <p>3. 기타 모든 支出의 日時·金額·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u>姓名·住所·職業</u></p>	<p>.....</p> <p>1.....<u>수입</u>.....<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u>.....</p> <p>2.....<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u>.....</p> <p>3.....<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u></p> <p>②.....</p> <p>1.....<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u> 다만,.....</p> <p>2. <u>후원회지정권자</u>.....</p> <p>3.....<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u></p>

현 행	개 정 안
<p>③後援會를 둔 <u>國會議員 및 國會議員 候補者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責任者를 選任하여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 그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비치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1. (생 략)</p> <p>2. 支出의 日時·금액·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職業</p> <p><신 설></p>	<p>③.....<u>국회의원의</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p> <p>.....<u>직업·전화번호</u></p> <p>④<u>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1. <u>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으로부터 받은 그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일자·금액,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u></p> <p>2. <u>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활동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일자·금액·</u></p>

현행	개정안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會計帳簿의 種類·書式·記載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p> <p><신 설></p>	<p><u>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u></p> <p>가. <u>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u></p> <p>나. <u>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u></p> <p>다. <u>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비용</u></p> <p>라. <u>의정활동보고 그 밖의 직무활동 비용</u></p> <p>마. <u>당비납부 등 정당활동비용</u></p> <p>바. <u>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u></p> <p>⑤제1항 내지 제4항.....</p> <p>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p> <p>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p>

현 행	개 정 안
	<p><u>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 및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와 이 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록 또는 변경신고·등록한 회계책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회계책임자로 본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신용카드, 후원회인·대표자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u></p> <p><u>③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 1인을 둘 수 있다.</u></p> <p><u>④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⑤누구든지 동시에 2 이상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회계책임자 및 회계사무보조자가 될 수 없다.</u></p> <p><u>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⑦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신고, 인계·인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u>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공직선거후보자등이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8 808 392 842"><신 설></p>	<p data-bbox="863 331 1417 763">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data-bbox="826 808 1417 1070">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 ①정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p> <p data-bbox="863 1115 1417 1205">②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data-bbox="863 1305 1417 1955" style="list-style-type: none">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 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의 목적·일시 및 금액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3. 중앙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第23條(會計帳簿의 保存) 政黨·後援會·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候補者의 會計責任者는 第22條의 會計帳簿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明細書 및 領收證을 이 法에 의한 會計報告를 마친후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p>	<p>③중양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헌·당규에 정하는 회계처리절차 준수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p>④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4조(당비)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원부 및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영수증,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구입(지급)품의서를..... </p>

현 행	개 정 안
<p>第24條(會計報告) ①政黨의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 및 後援會와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會計責任者는 매년 12月 31日 현재의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다음해 2月 15日까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와 後援會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때,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後援會指定을 撤回하거나 後援會를 들 수 있는 資格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日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4조(회계보고)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상황 2.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 [수입내역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치자금의 지출금액·내역 및 결산내역 4.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 <p>②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으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48 689 395 725"><신설></p> <p data-bbox="248 1684 395 1720"><신설></p>	<p data-bbox="855 324 1410 651">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8월 15일까지,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5 689 1410 164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기준일과 2월 이내로 서로 겹칠 때에는 제2항의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하되, 제1항제1호의 내역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5 1684 1410 1955">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내역을 당해선거일 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 마감일후 10일까지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②公職選舉에 참여한 政黨의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의 會計責任者는 選舉期間중의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당해 選舉日후 30日(大統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후 40日)까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들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5. 공직선거후보자들이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 <p>⑥.....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1월(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선거일후 20일(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p>

현 행	개 정 안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과 決算 內譯을 보고하는 때에는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政黨과 後援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보고하는 때에는 代議機關이나 그 受任機關의 審査·議決을 거쳐야 하며, 그 議決書 寫本과 自體監査機關의 監査意見書を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의 中央黨과 그 後援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書を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⑤第1項 내지 第4項의 보고에 관하여</p>	<p>.....</p> <p>⑦제1항 내지 제6항.....수입·지출.....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및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p> <p>⑧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입기관을 포함한다. 후원회에 한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당해 정당소속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p> <p>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사실대로 감사하였다는 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⑩회계보고.....</p>

현 행	개 정 안
<p>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p> <p>第24條의2(財産 및 收入·支出內譯 등의 閱覽 및 異議申請) ①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된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과 첨부서류를 그 事務所에 비치하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日부터 3月間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된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p>	<p>.....</p> <p>.....</p> <p>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p> <p>..... 제24조(회계보고).....</p> <p>..... 수입·지출내역.....</p> <p>.....</p> <p>.....</p> <p>.....</p> <p>.....</p> <p>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 이하(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 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③누구든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제24조.....</p> <p>.....</p> <p>..... 수입·지출내역.....</p> <p>.....</p> <p>.....</p>

현 행	개 정 안
<p>異議에 대한 證憑書類를 갖추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期間중 언제든지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p> <p><u>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異議申請事項을 調査·확인(第24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및 그 處理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u></p> <p><u>第24條의3(選舉費用 보고등에 관한 特例) 公職選舉에 참여한 政黨과 候補者의 選舉費用의 收入金額·支出內</u></p>	<p>.....</p> <p><u>⑤제4항의.....</u> <u>제24조제7항.....</u></p> <p><u>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u></p> <p><u>⑦회계보고서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24조의3(선거비용 보고등에 관한 특례)</u></p>

현 행	개 정 안
<p>譯의 보고와 報告書등의 閱覽 및 異議申請등에 대하여는 이 法에 같음하여 <u>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u>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同法에 의한 보고등이 있는 때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보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u>第25條(資料要求등)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政黨·後援會·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候補者에 대하여 關係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資料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u></p> <p><신 설></p>	<p>.....<u>공직선거법</u>.....</p> <p><u>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 ①</u>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법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u>②</u>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8 981 395 1014"><신 설></p> <p data-bbox="248 1630 395 1664"><신 설></p> <p data-bbox="248 1944 395 1977"><신 설></p>	<p data-bbox="866 331 1417 539">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p> <ol data-bbox="866 562 1417 943"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p data-bbox="866 981 1417 1592">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 data-bbox="866 1630 1417 1899">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p> <p data-bbox="866 1944 1417 1977">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8 947 392 981"><신 설></p> <p data-bbox="248 1435 392 1469"><신 설></p> <p data-bbox="248 1839 392 1872"><신 설></p>	<p data-bbox="866 331 1418 902"><u>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기간중 후보자(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u></p> <p data-bbox="866 947 1418 1361"><u>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66 1435 1418 1794"><u>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 data-bbox="866 1839 1418 1984"><u>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u></p>

현행	개정안
<p>第26條(公告)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第5條第2項, 第8條·第10條第3項 또는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나 登錄申請을 받은 때, 第6條第2項 또는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의 登錄을 抹消한 때, 第15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政治資金을 政黨에 支給한 때,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補助金을 返還받은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p> <p>第27條(免稅) 이 法에 의하여 政治資金을 納入 또는 寄附한 者 및 納入 또는 寄附받은 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 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政治資金에 相當하는 金額에 대한 法人稅·所得稅 및 贈與稅를 免除한다. 다만,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의 寄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양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공고)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3항.....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또는 제18조(보조금의 배분)..... 제21조(보조금의 반환).....</p> <p>제27조(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p>

현행	개정안
<p>第30條(罰則)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의 관계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品을 납입 또는 寄附한 者와 第6條의2第2項·第6項 및 第6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後援金을 받거나 金品の 모집, 납입 또는 寄附를 한 者</p> <p>2. 第6條의4 내지 第6條의7의 規定에 違反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와 第6條의5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바자회·書畫展등을 金品을 모집하기 위</p>	<p>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p> <p>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①.....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이하 같다..... 5년..... 1천만원.....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이하 같다.....</p> <p>②.....자는 5년..... 1천만원..... 이하 같다.....</p> <p>1.제6조의2제2항..... 이하 같다.....</p> <p>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p>

현행	개정안
<p><u>한 것을 벗어나 金品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者</u></p> <p>3. (생략)</p> <p>4. <u>第11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의 名義나 假名으로 政治資金을 寄託한 者</u></p> <p>5. <u>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은 者</u></p> <p>6. <u>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治資金의 寄附를 알선한 者</u></p> <p>7. <u>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者가 아닌 者로서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後援會나 이와 유사한 機構를 設置·운영한 者</u></p> <p>③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u>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u></p> <p>6. <u>제14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기부를 받거나 이를.....</u></p> <p>7. <u>제5조(후원회)제1항.....후원회 지정권자.....</u></p> <p>③ (현행과 같음)</p>
<p>第31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2. <u>第7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이나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과 상이한 금액을 納入·寄附한 者와 이를 받은 者</u></p>	<p>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3년.....600만원.....</p> <p>1. <u>제4조(당비)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7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당비 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 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부·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이</u></p>

현 행	개 정 안
<p>3. <u>第7條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法律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後援會에 발급한 定額領收證의 一連番號를 公開하거나 이를 다른 國家機關에 告知한 者</u></p> <p>4. <u>第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員名簿의 閱覽을 强要한 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員名簿에 관하여 職務上 알게 된 事實을 漏泄한 者</u></p> <p>5. <u>第1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正當한 사유없이 殘餘財産을 引繼하지 아니한 者</u></p> <p>1. <u>第6條第2項,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計帳簿를 備置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한 者 또는 보고를 懈怠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者</u></p>	<p><u>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u></p> <p>2. <u>제7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u></p> <p>3. <u>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2항… …………… 같은 조…………… …………… ……………</u></p> <p><u><삭 제></u></p> <p>4. <u>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u></p>

현행	개정안
<p>6. <u>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計帳簿·明細書·領收證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u></p> <p>8. <u>第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者</u></p> <p><u>第32條(同前)</u>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u><신 설></u></p> <p>1. <u>第5條第2項, 第6條第1項, 第10條第3項,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懈怠한 者</u></p> <p>2. <u>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제작한 領收證用紙에 의한 領收證 또는 定額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한 者</u></p>	<p><u>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u></p> <p>5. <u>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u> <u>……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및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 서를……</u></p> <p>6. <u>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u> <u>……</u></p> <p><u>제32조(각종의무규정위반죄) ①……</u> <u>……2년……400만원</u> <u>……</u></p> <p>1. <u>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u></p> <p><u><삭 제></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3. <u>第8條第1項·第3項, 第10條第2項 또는 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申請 또는 變更登錄申請을 懈怠하거나 虛僞의 申請을 한 者</u></p>	<p><삭 제></p>
<p>5. <u>第6條의2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寄附를 한 者 또는 國庫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者</u></p>	<p><삭 제></p>
<p><신 설></p>	<p>2. <u>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한 회계보고의 기한까지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u></p>
<p><신 설></p>	<p>3. <u>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영수증원부,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u></p>
<p>4. <u>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補助金을 사용하거나 經理한 者</u></p>	<p>4. <u>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u></p>
<p><신 설></p>	<p>5. <u>제2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u></p>
<p><신 설></p>	<p>6. <u>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재산</u></p>

현행	개정안
	<p>및 정치자금의 잔액, 회계장부 등을 인계·인수하지 아니한 자</p>
<p><신설></p>	<p>7.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 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신설></p>	<p>8.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 입·지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p>
<p><신설></p>	<p>9.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 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p>
<p><신설></p>	<p>10. 제24조(회계보고)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감사보고를 한 자</p>
<p><신설></p>	<p>11.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 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 적 목적에 이용한 자</p>
<p>第31條(同前) 7. 第19條第4項·第24條의2第3項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選舉管理委員 會의 調査 또는 資料確認이나 제출 요구에 正當한 사유없이 應하지 아</p>	<p>12.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②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등)제4 항·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 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 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니한 者</u></p> <p><u>第33條(同前) 第31條第1號의 경우에 政黨 또는 後援會의 代表者나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候補者가 그 會計責任者의 選任 및 監督에 상당한 注意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u>또는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u>.....아니하거나</u> <u>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33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가 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정당·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지출한 자 3. 제2조(기본원칙)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3항,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4항, 제10조의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등)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국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8 790 395 824"><신 설></p> <p data-bbox="248 1442 395 1476"><신 설></p>	<p data-bbox="879 331 1254 365"><u>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자</u></p> <p data-bbox="863 409 1417 555">5.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p> <p data-bbox="863 600 1417 745">6.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 data-bbox="828 790 1417 1395">제33조의2(양벌규정) 정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및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 data-bbox="828 1440 1417 1653">제33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 data-bbox="863 1686 1417 1899">1.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를 해태한 자</p> <p data-bbox="863 1933 1417 1966">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p>

현행	개정안
	<p><u>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u></p> <p>②<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p> <p>1. <u>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를 지체한 자</u></p> <p>2. <u>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u></p> <p>③<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p> <p>1. <u>제5조(후원회)제2항,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1항 단서·제2항,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항·제3항,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2항·제3항,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제1항,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 및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u></p>

현 행	개 정 안
	<p>2. 제5조(후원회)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p> <p>3.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 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p> <p>5.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된 자</p> <p>6. 제24조제7항·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p> <p>7.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p>

현 행	개 정 안
	<p><u>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국가에 납입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지급될 보조금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지급할 기탁금·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u></p> <p><u>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p> <p><u>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u></p> <p><u>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8 465 395 499"><신 설></p>	<p data-bbox="863 331 1417 421"><u>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u></p> <p data-bbox="826 465 1417 1473"><u>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 data-bbox="863 1518 1417 1899"><u>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u></p> <p data-bbox="826 1944 1417 1977"><u>제33조의5(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u></p>
<p data-bbox="248 1944 395 1977"><신 설></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48 981 395 1014"><신설></p>	<p data-bbox="863 331 1417 936"><u>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 data-bbox="826 981 1417 1821"><u>제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u></p> <p data-bbox="826 1861 1417 1951"><u>제33조의7(피고인의 출정) ①정치자금 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8 1267 395 1301"><신 설></p> <p data-bbox="248 1688 395 1722"><신 설></p>	<p data-bbox="863 331 1417 479"><u>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63 501 1417 763"><u>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u></p> <p data-bbox="863 786 1417 934"><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 data-bbox="863 956 1417 1218"><u>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26 1263 1417 1301">제33조의8(기소·판결에 관한 통지)</p> <p data-bbox="863 1323 1417 1644"><u>①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및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63 1688 1417 1951"><u>②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u></p>